

#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2012. 4. 1

## I.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당사와 당사의 협력회사 간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1. 기본원칙

이 가이드라인은 당사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2.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가.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 (1)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 위원장 : 경영지원담당 임원
- 위 원 : 조립팀장, 조달팀장, 선행생산팀장, HSE/품질경영팀장
- 간 사 : 생산지원그룹 그룹장(위원회 준비 및 진행 담당)

(2) 기존에 하도급 관련 업무 조직에서 운용 중인 심의 위원회나 심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기구나 절차에서 심의할 수 있다.

## 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 (1)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2) 내부 심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수급사업자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금액이 6억원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 〈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

-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 ③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 ④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 \* 개별 계약 건 적법성 Check sheet 첨부

- (3)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 (4)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 (5)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6)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7)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부 칙(2012. 4. 1)

이 가이드라인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3년 5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첨부. 개별 계약 건 적법성 Check Sheet

PO No. Item명 : Supplier명 :		심의자: 심의일:			
심의 항목	심의 Point		심의결과		
			적합	부적합	시정조치
1. 서면 계약서 발급 의무	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 의무				
	계약금액				
	위탁일				
	위탁내용				
	납품일/장소				
	납품일/장소				
	대금지급방법				
	지급일				
2.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구매 강제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물품, 장비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경제적 이익부당 요구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찬조금, 협찬금, 지원금 등을 요구하는 행위				